#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23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황명선・이학영・박지원

박해철 • 이훈기 • 서미화

박정현 • 이개호 • 민병덕

강준현 · 송옥주 · 허성무

박균택 • 전재수 • 백선희

박 정ㆍ김현정 의원

(17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도 신고 기준이 부재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 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의2).

#### 법률 제 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 및 가상자산"을 "증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을 "증권,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월간 종목별 합계 1억원 이상의 증권 거래
- 2. 월간 종류별 합계 1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 3. 부동산 거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 <u>주식 및 가상자산</u> 거래	제6조의2( <u>증권 등</u> 거래내역의 신		
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고) ①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			
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			
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u>주식</u> 및 가상자산의 취득	<u>증권, 부동산</u>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그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월간 종목별 합계 1억원 이		
	<u>상의 증권 거래</u>		
<u>&lt;신 설&gt;</u>	2. 월간 종류별 합계 1억원 이		
	<u>상의 가상자산 거래</u>		
<u>&lt;신 설&gt;</u>	<u>3. 부동산 거래</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